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5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5월14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 제안사유

-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중 현실여건에 불부합되는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부천시민협회의 구성,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인상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의 배출·운반과 관련하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호, 제27조제5호)
- 협회회의 시민 참여확대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6조제1항)
- 쓰레기봉투 재질·크기·제작사양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정함(안 제16조제2항)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 및 산정방법을 조정함(안 제19조제2항 “별표6”)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지정된 장소로 하는 것을 일정한 장소로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어떤지?</p> <p>○ 쓰레기 봉투가격의 판매 이익금액은 얼마인가?</p> <p>○ 지정판매점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직접 지급하여 판매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판매가 될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p> <p>○ 조례안 제15조 2항의 개정이유는?</p>	<p>○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의 지정고시 등 청소행정의 추진에 많은 애로와 지정장소 지정시 주민의 반대가 예상됨</p> <p>○ 새마을금고등 도매는 2.5%이며 슈퍼마켓등 소매 지정판매점은 8%의 판매수수료가 지급됨.</p> <p>○ 과거 동사무소에서 직접 판매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으로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도록 도입한 것이며, 현재 약1,900여개의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이를 관리한다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됨.</p> <p>○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시 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각기 시민단체별 청소행정에 의견을 내고 있어 경기도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지역의 청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로 제한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수정안 요지
○ 불 임

-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제133호
의결연월일	2003.5.15 (제104회)

제안년월일 : 2003년 5월 14일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개정안에서 시민단체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각 단체별 1인을 위촉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5조의2(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협의회 설치)를 현행대로 수정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중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5인, 학계 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 폐기물처리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4.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등
5. 기타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5조의2(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설치)</p> <p>① (생략)</p> <p>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5인, 학계 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1인, 시의회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p> <p>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제15조의2(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6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할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p> <p>2. 대학교수 2인</p> <p>3. 시 소재 환경 및 시민단체별 그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p> <p>4.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또는 소장) 및 원미구의 과장</p> <p>5.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자</p> <p>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전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안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서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5조의2(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설치)</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1. 부천시 폐기물의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p> <p>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p> <p>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 참여</p> <p>4.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등</p> <p>5. 기타 시장이 폐기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p> <p>④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1. 부천시 폐기물 처리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p> <p>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p> <p>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 참여</p> <p>4.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등</p> <p>5. 기타 시장이 폐기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p> <p><삭제></p> <p>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선임한다.</p> <p>⑥제2항제3호의 환경 및 시민단체라함은 녹색모임회,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부천모임,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부천시지부,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천시새마을협의회, 푸른부천21 등 7개단체로 하며 각 단체별 1인의 위원을 위촉한다.</p> <p>⑦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수정안 포함]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지정된 장소”를 “일정한 장소”로 하고, 제8조제1항중 “공고하고”를 “홍보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지연하거나”를 “지연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9조제1호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동조제2항중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상차하거나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갖다놓으면”을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계약에 따른 단가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제16조제1항중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하고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를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쓰레기봉투 판매는 새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을 “재활용 가능”으로 한다.

제27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제19조 관련)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 \ 용도	일반용 · 재사용종량제 · 음식물전용봉투	공 공 용
3ℓ	60	
5ℓ	100	
10ℓ	200	
20ℓ	380	
30ℓ	570	
50ℓ	960	
100ℓ	1,900	

※ 공공용봉투는 무료 배부함.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 (주) 1. ℓ 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2.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3.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4.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8% 적용
 - 판매수수료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요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 요율})$
 6.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생활폐기물)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u>지정된 장소</u>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 ①----- ----- ----- <u>일정한 장소</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u>공고</u>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단서생략)</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 <u>홍보</u>하여 ----- -----.</p> <p>②----- ----- <u>지연할 수 있으며</u> ----- -----.(단서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생략)</p> <p>1.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u>설치</u>하여야 한다.</p> <p>2 및 3.(생략)</p>	<p>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현행과 같음)</p> <p>1.----- ----- -----<u>설치</u>할 수 있다.</p> <p>2 및 3.(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상차하거나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갖다 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② (생략) ③ (생략) 가.~다. (생략) 라.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대수 마.~사.(생략) ④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일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생략)</p>	<p>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②----- -----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p> <p>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삭제〉 마.~사.(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계약에 따른 단기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⑤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규격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한다.</p> <p>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의 10리터, 20리터의 색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옅은 녹색으로 한다.</p> <p>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p>	<p>제1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 ----- ----- -----</p> <p>②-----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
<p>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생략)</p> <p>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부천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및 ④(생략)</p> <p>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p>	<p>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현행과 같음) <삭제></p> <p>③ 및 ④ (현행과 같음) <삭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생략) <u><신설></u></p>	<p>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쓰레기봉투판매는 새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u></p>
<p>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생략) 1. <u>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u> 2. 및 3. (생략) ② (생략)</p>	<p>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현행과 같음) 1. <u>재활용 가능</u> ----- ----- 2. 및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생략) 1. ~ 4. (생략) 5. <u>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u></p>	<p>제27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용량 \ 용도	일반용 및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
3ℓ	60	
5ℓ	90	
10ℓ	160	
20ℓ	290	
30ℓ	470	
50ℓ	790	
100ℓ	1,560	

※ 공공용봉투는 무료 배부함.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 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플가,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 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 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 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당해연도 수집·운반·처리기준은 전년도 시·구·여산을 기준으로 한다.

2.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점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

용량별 \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적용비	40%	50%	60%	70%	80%	90%	100%

3. 제작비는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 자립도 × 0.09로 산정함.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개정안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제19조 관련)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 \ 용도	일반용·재사용종량제·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
3ℓ	60	
5ℓ	100	
10ℓ	200	
20ℓ	380	
30ℓ	570	
50ℓ	960	
100ℓ	1,900	

※ 공공용봉투는 무료 배부함.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값으로 산정

2.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3.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봉투의 판매 가격 환산금액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4.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8% 적용

$$\text{판매수수료}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times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수수료 요율}) \times (1 - \text{판매수수료 요율})$$

6.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